

4. 김제시 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4. 22.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 4. 30.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2004. 5. 12. 제84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세정과장 김원기)

가. 제 안 이 유

-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중개정법률 2003. 12. 30 법률 제7013호)에 따라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 회의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함 (안 제8조제2항)
- 납세고지서 송달의 방법에 직접 교부와 등기우편 이외에도 정기분 지방세 중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종전에는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함 (안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98조)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는 경우 양수자가 일할 계산을 신청해야만 사용한 날만큼 자동차세를 부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함 (안 제39조, 단, 2005. 1. 1부터 시행)
-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인 주행세의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안 제4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중개정법률 2003. 12. 30 법률 제 7013호)에 따라 김제시세조례를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오인근 위원

-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구성
7인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형식상의 모순이 아닌가요?

○ (답변) 김원기 세정과장

- 전문가를 위촉하여 회의시 전문성을 살리고, 7인의 위원이 회의를 한것
은 그 분야의 전문성과 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5. 토 론 요 지

- 질의시 오인근 위원이 제기한 제8조 제2항의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동 사항을 확인후 가결키로 합의함.

6. 심 사 결 과

-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
으로 원안 가결.